

食品衛生法 施行令

공포 : 각령제 811호(1962. 6. 12)
개정 : 대통령령제 5209호(1970. 7. 12)
개정 : 대통령령제 6443호(1972. 12. 30)
개정 : 대통령령제 6741호(1973. 6. 23)

政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6월 23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장관이 관장하는 식품제조업소 등의 허가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시킨것 등이 특징이다.

대통령령 제6741호로 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제품검사)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영양강화식품으로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다.

②전항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 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행한다.

제 2 조(제품검사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할 식품 또는 첨가물제조업자나 소분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와 함께 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품명

②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③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와 그 소재지

④제조 또는 소분 년월일

⑤신청수량

⑥소분용기의 용량별 개수

⑦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의 증량비율

⑧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

제 3 조(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 1 조에 규정된 식품 및 첨가물의 제품검사에 있어서의 검사 방법, 시험재료의 단위(양)과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①법제 1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의 규격 및 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와 표시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 관리인, 조리사, 영양사의 근무상태 및 이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
7.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8.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의 압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9.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직무수행을 위한 임검, 수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식품위생감사원의 자격 및 임명) 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사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사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
3.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자. (대학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사학위 등록을 한자로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자나 제 1호 또는 제 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 6 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 법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은 식육 및 어육연제품, 유 및 유제품(가공유 포함) 마아가린·청량음료수·통조림·병조림·인스탄트 식품(인스탄트면류를 포함한다) 영양강화식품·당류·장류·식용어름·식초·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 7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제 5조 제 2호 및 제 3호(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또는 초급대학의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라야 한다.

제 8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법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었거나 또는 영업자 자신이 식품 위생관리인으로 된 경우에는 제 11조에 의한 허가 신청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9 조(영업의 종류) 법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1. 음식점영업(식품을 조리하여 객에게 음식케하는 영업으로서 본조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흥음식점영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

- 한 유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집계부를 두어 행하는 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3. 다과점 영업(객석을 갖추고 주류이외의 음료수·다류·우유·빵류·빙과류 등을 판매하거나 이와 함께 면류·샌드위치 등 경식사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객석을 갖추고 주로 빵류·양생과자류·빙과류 등을 제조하여 주석에서 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간이음식점영업(일시적 시설 또는 소규모 시설의 음식점 영업과 계절에 따라 행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5. 빙과제조업(아이스크림류·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엿류제조업(물엿·덩어리엿 또는 가루엿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두부류제조업(두부·묵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절임식품류제조업(단무지·젓갈류·콩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입하는 영업등을 말한다)
 9. 과자류제조업(빵·빙과류·팔랑곰류 또는 병류제조업을 포함한다)
 10. 유제품제조업(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탈지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터유·치이스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가공유제조업(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지제조업
 13. 식용유지제조업(식물성 또는 동물성 유지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식육제품제조업(김승·새고기류를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어육연제품제조업(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통 또는 병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 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다류제조, (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청량음료제조업 (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19. 첨가물제조업(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 장류제조업(간장·된장·고추장 및 소스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1. 식초제조업
22. 영양강화식품제조업(식품에 다른 영양소를 첨가하여 그 식품의 외관과 맛에 큰 변화없이 영양을 강화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면류제조업(전면·숙면·라면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식용얼음제조업
25. 당류제조업(설탕·포도당 제조업을 말한다)
26. 주류제조업
27. 인스탄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8. 고추가루등 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후추·마늘류·계자·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

품 자체를 원료로하여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건조류제조업(식육 또는 어패류를 단순
히 건조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품가공업(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
한다)

31. 삭제

32. 유류판매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
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
한 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3. 식육판매업(수·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삭제

35. 식용얼음판매업

36. 어패류경매업(선어·조개류를 어패류시
장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7.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
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문 재포장하거나,
분배하는 영업을 말한다)

38. 집유업(생유·생산양유를 모아서 보존
하는 영업을 말한다)

39. 유처리업(우유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0.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41. 유류운반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
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
한 유류 제품 등의 운반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식육운반업(수·조육류·어패류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10조(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
관은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 제10
호·제14호·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관한다) 제38호·제39호와 제40호

(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의 업종에 관
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제26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
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1(영업등의 허가관청) ①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
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제9조 제19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영
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전호에 제기한 영업을 제외한 제9조 각
호의 영업의 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
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
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
이 행한다.

3.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 각호의 영업 중 제10호·제14호·
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
다) 제38호·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을 원
료로하는 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
림부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
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
가를 포함한다)는 진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의 2(영업허가의 범위) 제9조 제37호
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령으
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분업에 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 관청
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

제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그 허가 신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6. 제조방법설명서

②전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하는 영업이 제 9 조 제 2 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제 9 조 제 11 호·제 12 호·제 16 호·제 17 호·제 18 호 제 27 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 등) ①법제 2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1. 제 9 조 제 8 호·제 9 호·제 11 호 내지 제 13 호·제 15 호·제 18 호·제 25 호 및 제 27 호 및 제 29 호에 해당하는 영업, 다만 제 13 호·제 23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제공한 원료로 수수료만을 받고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 9 조 제 19 호 및 제 22 호에 해당하는 영업

②제조품목의 허가 및 그 신청절차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급식사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

1. 제 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 영업, 다만, 한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음식점은 제외한다.
2. 제 9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 영업,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3. 제 9 조 제 43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증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제 15 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 회 50 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 16 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 인을 포함한 위원 30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부·처·청의 공무원과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17 조(위원회의 입기와 직무) ①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
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
다.

③회의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
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보건사회부 소속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
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 1(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
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의 2(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
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
한 위원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
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
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령이 정하는 것 외에 위
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법제38조 제 2 항
(법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읍·면장이 하
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첨가물·기구·
용기 및 포장 또는 장난감 등의 병인물질
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시체의 혈액·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
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식품첨가물·기
구·용기 및 포장이나 장난감에 대한 세
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제3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
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
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동업자 조합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기
준) 삭제**

제26조(설립인가의 신청) ①법제40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조합 또는 동업
자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또는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위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정 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취임승락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7조(정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설립등기 등) 조합 또는 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지구 등) ①법제40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시·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정관변경의 인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 신규주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제31조(임원 취임신고) ①조합 및 연합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사업계획·수지에산서 또는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업무 및 회계감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권한 위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 9 조 제11호·제12호·제16호·제17호 제18호·제27호 및 제11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영업 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 제 1 항 제 2 호의 권한 및 법제16조·법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건소장이 수입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당류 및 장류제조업소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